

2024. 2. 2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이정옥

2133-8680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경길

2133-8681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2쪽

관련 누리집  
(서비스 신청)

<https://familyseoul.or.kr>  
<https://seoulgasa.or.kr>

### 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 대상 6천 가구→1만 가구, 이용횟수 6회→10회 확대해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
- 서울거주 중위 150% 이하 가구 대상·장애·질병 등으로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지원...21일(수)부터 4개월 간 수시신청 접수

-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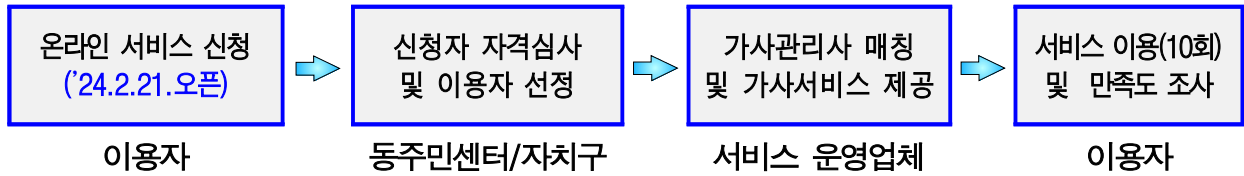
-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 (공통)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 2명 이상인 경우
- ※ '05. 2. 22.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는 오는 2월2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30일(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 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권역별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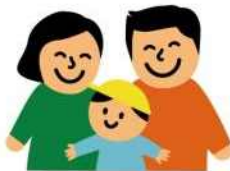
권역	자치구	업체	연락처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서북권	은평구, 마포구	(주)참사랑씨앤이	02-3473-0508
	양천구, 강서구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02-2065-1584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든든피플 주식회사	02-845-8797
동북권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60-4766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주)유라이프	02-589-0115
	송파구, 강동구	(주)휴브리스	02-2135-2299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엄마아빠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관리사가 찾아갑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중위소득 150%)
- 모집기간 : 2024. 2. 21. ~ 6. 30.
- 신청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https://seoulgasa.or.kr>)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호

##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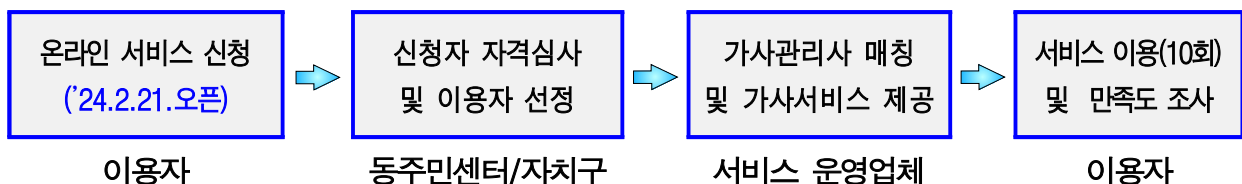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지원규모 : 약 10,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 제외 : 정리수납,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절차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4. 2. 21.(수) 오픈
  - 신청기간 : '24. 2. 21.(수) 10:00부터 ~ 6. 30.(일) 23:59까지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http://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http://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결과안내 :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권역	자치구	업체	연락처
도심권 (7)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서북권 (4)	은평구, 마포구	(주)참사랑씨앤이	02-3473-0508
	양천구, 강서구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02-2065-1584
서남권 (5)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든든피플 주식회사	02-845-8797
동북권 (5)	종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60-4766
동남권 (4)	서초구, 강남구	(주)유라이프	02-589-0115
	송파구, 강동구	(주)휴브리스	02-2135-2299

□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2024년 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이하	5,524,000원	7,07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11,428,000원	12,773,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미포함	196,672	146,739	199,492
		포함	-	-	-
3인	7,072,000	미포함	251,147	210,599	255,837
		포함	283,671	237,872	288,968
4인	8,595,000	미포함	304,986	271,091	314,423
		포함	344,482	306,197	355,141
5인	10,044,000	미포함	360,818	332,772	377,299
		포함	407,544	375,866	426,159
6인	11,428,000	미포함	422,318	400,222	453,848
		포함	477,008	452,051	512,621
7인	12,773,000	미포함	453,848	433,430	498,289
		포함	512,621	489,559	562,817
8인	14,118,000	미포함	543,979	524,772	589,232
		포함	614,424	592,730	665,538
9인	15,463,000	미포함	589,232	567,285	659,065
		포함	665,538	640,748	744,414
10인	16,808,000	미포함	659,065	625,932	773,009
		포함	744,414	706,990	873,114



1.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1.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① <b>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b> - 필요시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해당시) <b>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b>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③ (해당시) <b>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b>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① <b>임신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b>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 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b>*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b>		상시 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재직기관(고용임금 확인서) 등